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11. 16.
행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1. 6. 최은하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2026. 11. 9.

다. 상정일자: 제286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2026. 11.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안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단원 자격을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자격 상실 등에 따른 해촉 기준을 정비하며, 객원단원 운영 근거와 단원의 의무를 마련하여 연주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객원단원의 위촉·운영 근거와 정원·자격 및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사유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위촉기간을 해당 공연의 준비 및 공연

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단원 간 화합과 품위 유지, 기량 향상 및 성실한 연습·공연 참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단원의 거주 요건에 주민등록 기준을 명시하고,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단원 자격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

○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입법예고 : 2026. 11. 9. ~ 11. 13. (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1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단원 자격을 관내 사업장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객원단원 운영 근거와 단원의 의무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연주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의2) 공연에 필요한 객원단원 위촉 및 운영 근거 신설

○ (안 제5조제2항) 단원의 화합, 품위유지 및 성실한 연습·공연 참여 의

무 신설

○ (안 제6조제1항) 단원 자격을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에서 관내 사업장 종사자까지 확대

○ (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단원 자격 상실, 본인 의사 및 질병·부상 등에 따른 해촉 사유 신설

③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객원단원 제도 도입과 단원 자격 확대를 통해 공연에 필요한 전문 연주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관내 사업장 종사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음악 인재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객원단원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공연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단원의 의무와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단원 관리의 체계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④ 조문별 검토 및 유의사항

1. 객원단원 제도 신설(안 제3조의2)

○ 공연에 필요한 전문 연주인력을 객원단원으로 위촉하고, 정원 및 일반단원의 자격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연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객원단원에 대한 정원 및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위촉 인원, 선정 기준, 위촉기간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단원의 의무 신설(안 제5조제2항)

○ 단원의 화합과 품위유지, 기량 향상 및 성실한 연습·공연 참여 의무

를 명문화하여 구립예술단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3. 단원 자격 확대(안 제6조제1항)

○ 단원 자격을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연주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19건을 조사한 결과, 12건(63.2%)이 거주자 외의 사람에게도 단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거주자로 한정한 7건 중 3건은 자격 완화 단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조사 대상 19건 중 15건(78.9%)이 거주자 외의 사람에게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어 단원 자격 확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4. 단원 해촉 사유 신설(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 단원 자격 상실, 본인의 해촉 의사 및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단원 관리의 명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내 사업장 종사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과 해촉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객원단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단원 자격 확대와 의무 및 해촉 기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연주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관내 사업장 종사자의 참여 확대와 객원단원 제도 도입은 우수한 연주인력 확보 및 공연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객원단원의 선정 기준과 수당 지급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단원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붙임 1 지자체 조례별 단원 자격 조항

연번	지자체	대상단체	단원자격조문
-	서울 마포구	윈드오케스트라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
1	강원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
2	서울 강북구	여성·시니어·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서울 금천구	여성·시니어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청소년오케스트라	성인: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 또는 근로자" / 청소년: "…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부산 사상구	여성합창단 / 소년소녀합창단·청소년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사상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상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청소년 "…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서울 중랑구	여성·실버합창단, 실버악단 / 청소년오케스트라	성인 단체 "구에 거주하는" / 청소년오케스트라 "구에 거주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6	부산 서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서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
7	전남광주 무안군	초·중학생	단원은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무안군 거주 사회취약계층 우선 선발
8	부산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부산광역시 내의 초·중·고등학생", 영도구 주민 우선 선발 가능
9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

10	서울 구로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
11	충남 홍성군	일반 오케스트라	"기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 – 거주 요건 없음
12	충남 금산군	오케스트라·합창단	공개전형과 위촉연령만 규정 – 거주 요건 없음
13	서울 성동구	합창단·꿈의 오케스트라·극단 등	일반단원은 "성동구 주민", 거주지 등 세부 요건은 규칙에 위임
14	서울 구로구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65세 이상)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구민", 적격자 부족 시 거주·연령 제한 미적용 가능
15	서울 구로구	꿈의 오케스트라 (초등 3~5학년)	"구로구 거주자 중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16	부산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65세 이상)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적격자 부족 시 거주·연령 제한 미적용 가능
17	부산 중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부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중에서" 학교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자 미달 시 요건 완화 가능
18	충북 음성군	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19	전남광주 곡성군	청소년 오케스트라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참고	제주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별표 1]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